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
-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(위반한 경우 과태료 50만원)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)
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



동 해 시

4. 건설기계검사란					충남04모1037 5. 등록사항변경란			
구 분	검 사 일	유효기간 (까 지)	검사기관	담 당 자 성 명	연 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 인
신규등록일 : 2016-12-13								
신규(결사)	2016-12-13	2018-12-12		신규(부활) 등록관청				
정기검사	2018-11-30	2020-12-12		안전관리원충남본검사소	양영균			
정기검사	2021-02-22	2023-02-22		안전관리원충남본검사소	성시형			
정기검사	2023-04-03	2025-02-22		안전관리원충남본검사소	성시형			
* 주의사항 : 첫째란에는 신규 등록일을 적습니다. * 수입건설기계의 제작년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				

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

제 호 경기86-2018-0215-00
성 명 이상경
주민등록번호 700727-1921211
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
중앙길 81
국 적 대한민국
발급 일자 2018. 09. 11.
소지 면허 3톤미만지게차(2018/09/11)

위의 사람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8조에 따른
건설기계조종사임을 증명합니다.
2018년 09월 11일

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

